

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훈 계 · 시 정 요 구

제 목 산지전용허가 만료지 사후관리 업무 태만

기 관 명 충청남도 서산시

훈 계 대 상 자 충청남도 서산시 ○○과 지방○○○○ ○○○

내 용

지방○○○○ ○○○은 2014. 9. 29.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충청남도 서산시 ○○과에서 ○○면 ○○리 ○○○-○번지 외 2필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하여 실무책임자로 근무하였다.

「산지관리법」 제39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거나 그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경우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고,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는 산지전용 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 10일 이내에 시장·군수에게 산지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, 복구의무자가 복구기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하면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.

충청남도 서산시(○○과)에서는 소매점 및 단독주택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된 서산시 ○○면 ○○리 ○○○-○번지 외 2필지 16,836㎡에 대한 허가기간

이 만료된 건에 대하여 2014. 9. 4. 산지전용허가지 복구설계 승인을 하면서 수 허가자에게 2015. 3. 4.까지 복구한 후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였다.

[표] 산지전용허가 만료지 현황

위 치	면 적	허가일자	목 적	허가기간	수허가자
충남 서산시 ○○면 ○○리 ○○○-○번지 외 2필지	16,836㎡	2010. 8. 10.	소매점 및 단독 주택	2010. 8. 10. ~ 2014. 5. 31.	(주)○○ 대표 ○○○

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5. 3. 4. 산지복구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5. 10. 19.에서야 복구공사 이행 촉구 공문을 시행하는 등 산지전용허가 만료지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.

그리고 2015. 11. 10. 산지전용 사후관리 문제에 대한 언론보도¹⁾ 시 위 만 료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, 해당 건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서도 2017. 11. 9. 까지 2년여 간 대집행 등 행정 조치 없이 방치하여²⁾ 만료지가 훼손 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 경관 저해 및 토사 유출 우려가 있다.

또한 「산지관리법」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5호에 따라 복구 대 집행 전에 다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 또 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로서 목적사업을 위하여 이미 조성한 사업부지(비탈면은 제외한다) 등을 산림으로 복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만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, 수 허가자가 산지전용기간 만료 후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 수리한 사

1) 2015.11.10. ○○일보 보도 “서산, 산지전용허가 남발, 복구는 수수방관”

2) 언론보도 후 2년여가 지난 2017.11.10. 산지전용기간만료지 복구 이행 촉구 공문 시행(서산시 ○○과-○○○○○호)

항이 없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수허가자가 산지복구의무 이행 없이 태양광발전 허가 절차³⁾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다.

조치할 사항 충청남도 서산시장은

[훈계]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.

[시정] 사업변경 등을 사유로 산지전용기간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미 복구 중인 동 사업자에게 재촉구 등을 통하여 조속한 시일 내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.

3) 수허가자 (주)○○ 대표 ○○○는 2016.1.7. 충남도로부터 (태양광) 발전사업허가증을 받았고, 이후 서산시에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를 추진하였으나, 지역주민 극심한 반대로 현재 사업 불투명.